
**송도국제도시 아암공원(B) 실시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017. 5.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고

『송도국제도시 아암공원(B)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에 따른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공개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 ☐ 심의방법: 서면심의
- ☐ 심의일시: 2017.04.28~05.20.
- ☐ 협의회구성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승인기관), 한강유역환경청(협의기관), 인천시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환경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 사업 개요

- 사업명: 송도국제도시 아암공원(B) 실시계획 수립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2·7·8·9·11공구 일원
- 사업규모: 3,784,175.8m²
 - 기협의 면적 : 아암공원(A) 1,493,933.0m²
 - 금회 협의대상 면적 : 아암공원(B) 2,290,242.8m²

- ☐ 아암공원(A) 추진현황
 - '08.04.15. : 송도지구 개발사업(5,7공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완료
 - * 아암공원(A) 1,493,933.0m² 포함 재협의 완료
 - '16.12.30. : 아암공원(A) 실시계획 승인 고시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2·7·8·9·11공구 일원
- 사업시행자(승인기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목표년도: 2020년

제1장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 본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아암공원(B)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아암공원(A,B) 전체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1.2 사업의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

- ☐ 추진현황

《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

일 시	추진경위
2003.08.1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3km ² 지정
2004.11.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재정경제부고시 제2004-20호) -송도지구 1단계 개발사업지구 중 일부를 선도사업개발지로 선정
2005.02.1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재정경제부고시 제2005-5호) -단계별 계획에서 1단계 개발사업을 1-①, 1-②단계로 세분
2005.11.2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2호) -국제업무단지 토지이용계획, 공공편익시설, 공급처리시설 등의 변경사항 반영
2006.05.0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재정경제부고시 제2006-15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공급처리시설 등의 변경사항 반영
2006.10.3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8호) -지식정보산업단지내 u-IT클러스터 구축 지원 및 기타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공급처리시설 등의 변경사항 반영
2007.01.0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재정경제부고시 제2006-62호) -단독주택용지와 체육시설(골프장)이 분리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을 국제업무단지의 위상에 걸맞는 골프장 주택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단독주택용지 폐지
2007.05.2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재정경제부고시 제2007-23호) -지식정보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 계획을 수용한 개발계획의 변경
2007.08.30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재정경제부고시 제2007-40호) -첨단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국제화복합단지를 우선 조성하기 위해 송도지구 7공구 일부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등 반영
2007.10.0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재정경제부고시 제2007-48호)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의 일부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등 반영
2008.01.0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재정경제부고시 제2008-1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유인을 위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반영
2008.04.2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8-209호) -국제업무단지의 위치·면적을 일부 조정하며,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
2008.05.09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8-41호) -첨단산업클러스터 환경·교통 영향평가서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시가지조성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바이오단지 구역면적 변경

일 시	추진경위
2008.09.30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5호) -바이오단지내 교통 공급시설 확보를 위하여 공영차고지부지 면적 확대 및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교통 영향평가 심의 내용 반영을 위하여 버스베이 설치 반영
2009.02.2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09-90호) -국제업무단지 공급처리시설, 공공청사 및 주차장용지 등 일부 토지이용 변경
2009.08.0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62호)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 건립계획 반영, 교육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교육연구용지 확보, 오수중계펌프장 및 가압속차로 등 실시설계 결과 반영
2010.07.2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바이오단지 개발계획 변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342호)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신축공사 이전사업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정책 심의위원회 결과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2010.10.19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389호) -송도해안도로확장공사 준공에 따른 지구계 변경 및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2011.06.0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105호)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주차장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산업용지내 재배치 및 인천대학교와 지하철역간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2011.10.1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정정고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178호)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사항을 단위개발사업지구인 “국제업무단지”로 정정고시
2011.11.0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계획 변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192호)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2011.11.07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210호) -공공청사용지를 국제업무용지로 변경하고 어린이공원, 공공보행통로 변경 및 일부 블록 주택공급계획 조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2011.12.0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1-248호)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내 투자유치된 삼성바이오제약단지 조성계획과 가천의과학대학교 조성계획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2012.01.17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16호)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내 투자유치된 삼성바이오제약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 대책 협의내용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2012.02.1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2-28호)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내 동아제약 유치계획 등 투자유치계획 반영 및 송도국제화복합단지내 자전 거도로 조성계획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2012.05.10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개발계획 변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2-118호)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중대형→중소형)에 부합하는 주택공급계획 반영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2012.12.2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17호) -국제업무단지 토지이용계획 및 외국인 임대주택 비율 조정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2013.01.03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 정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332호) -송도지구 전체 토지이용계획표 중 일부 수치 오기 정정
2013.03.20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35호) -국제업무단지 자율형 사립고를 설치하고자 학교용지 및 녹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2013.03.29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 변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81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대규모 국내·외 행사를 위한 국제 문화교류시설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원 일부를 인천한옥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 반영
2013.06.1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개발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46호)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제조 및 R&D센터 투자유치계획 반영

일 시	추진경위
2013.11.07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283호) -지식정보산업단지내 한국 첼시축구교실 설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2014.01.13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7호) -신항물류단지 A, B에 편입되어 있는 북측수로 및 시가지 조성단지 내 인구를 첨단산업클러스터(C)로 이관, 대규모 조류대체서식지 조성으로 잔여지구 통합개발
2014.02.1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8호)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주유소 위치 변경에 따른 변경
2014.03.17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64호) -호텔·서비스산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상업시설용지 확충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
2014.09.2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61호) -첨단산업클러스터(B)내 소방서용지 및 기숙사용지 등을 반영
2014.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승인[18개 단위개발사업지구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187호) -단위개발사업지구별로 인구지표 통합 조정(2.55인/세대) 및 인구 및 세대수 조정
2014.10.20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77호) -아암물류단지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견 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2014.11.1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296호) -인하대학교 융합연구센터 설립관련 토지이용계획 및 교육연구시설계획 변경 등 반영
2014.11.26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첨단산업클러스터(C)] 개발계획(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4호) -인구수용계획변경(2014.10.20)에 따라 학교 등 기반시설 수요 반영, 수로노선 변경 및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용지별 위치 조정
2014.12.1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332호) -주상복합용지(Rm2) 인구수용 및 주거시설조성계획 변경, 전기공급시설용지 면적축소
2015.01.1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신항물류단지(A),(B)]개발계획(변경) 승인(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2015-17호) -제2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변경(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66호, 2013.12.31.) 반영
2015.02.2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53호) -연구시설용지(Sr13) 일부를 청소년수련시설용지(Yt1)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2015.03.19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국제여객터미널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74호) -「제2차(2012~2020)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항만배후단지 지정(변경)」 내용 반영
2015.05.29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송도국제화복합단지·인천글로벌캠퍼스]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122호)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 진입도로 신설 및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로 단위 사업구역 명칭 및 사업시행자 변경 반영
2015.07.10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165호)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사항 변경
2015.12.2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5-325호) -공립유치원 부지 확보를 위해 학교(유치원) 신설 및 복지시설용지 면적 감소

일 시	추진경위
2015.12.3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5-344호) -학교시설용지 신설 및 증설에 필요한 일부 공공기반시설용지의 면적 변경 반영
2016.03.2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국제여객터미널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54호) -국제여객터미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견 반영 및 1단계 매립부지 지적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변경
2016.05.31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109호) -첨단산업클러스터(C) 외국인 주택공급계획 변경 및 기반시설 추가확보, 제영향평가 반영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및 매립준공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첨단산업클러스터(C),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단위개발사업지구 구역계 조정
2016.11.1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B)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221호) -첨단산업클러스터(B) 주유소용지 위치 조정 및 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2016.12.1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아암공원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25호) -복합쇼핑몰 입지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사항 반영 -아암공원(A,B) 구적오차로 인한 편입면적 오기 사항, 기반시설계획 오기 사항 정정·반영
2016.12.26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6-228호)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내 공동구관리사무소 신설 및 오수중계펌프장 폐지 -주상복합용지(M2) 및 일반상업용지(R2) 계획변경에 따른 기반시설계획 변경
2017.01.03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아암물류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232호) -아암물류단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기반시설계획 변경 사항 반영
2017.03.27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10호) -송도아메리카타운(M-2) 인구수용계획 변경 및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2017.04.1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신항물류단지(A,B) 개발계획(변경) 승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7-15호) -신항물류단지(B) 내 항만배후단지(1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의한 계획구역 조정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 반영 등

《 환경영향평가 》

- 1991.05.06 :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 1993.08.03 :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 1994.03.31 :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시가지 조성부문)환경영향평가 협의
- 2000.12.12 : 송도신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 2001.08.09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 2002.06.28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 2005.11.07 : 송도신도시조성사업(국제업무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 2006.03.29 : 송도신도시조성사업(4공구6블럭내 대학교신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 2007.04.19 :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
- 2008.04.15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개발사업(5, 7공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협의
- 2009.01.12 :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 2010.04.23 : 송도11공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 2016.03.25 : 송도11공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 아암공원(A) 실시계획 추진경위 》

- 1979.09.24. : 송도지역 공유수면 종합매립 기본계획 수립
- 1990.11.12. :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 승인(17.7km²)
- 1994.08.03. : 송도지역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인가(17.7km²)
- 1999.03.22. : 송도신도시 도시계획 결정(인천광역시고시 제1999-31호)
- 2000.01.04. : 시가지조성단지 결정(인천광역시고시 제1999-198호)
- 2000.12.29. : 시가지조성사업 송도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인천광역시고시 제2000-239호)
- 2003.08.11.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3-19호)
- 2008.04.15. : 송도지구 개발사업(5,7공구)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협의 완료
- 2008.09.30. : 송도지구 시가지조성단지 실시계획 승인(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39호)
- 2016.12.05. : 아암공원(A,B)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 2016.12.14. :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아암공원(A,B)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경제청고시 제2016-225호)
- 2016.12.30.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아암공원(A) 실시계획 승인

□ 향후계획

- 2017.07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17.07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 2017.10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협의요청

1.3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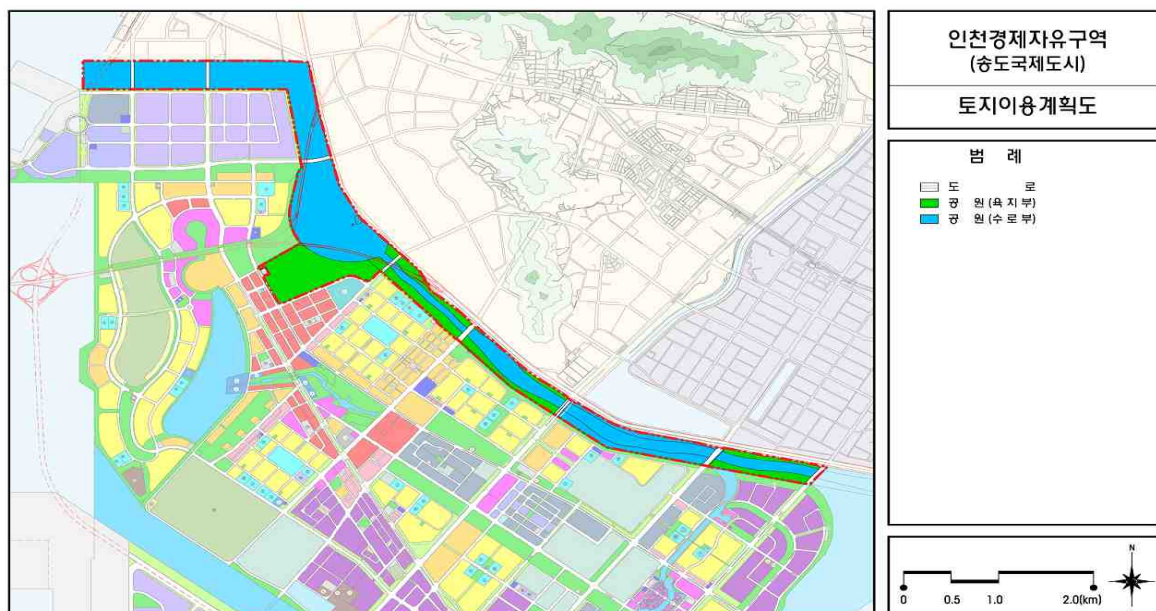
□ 사업시행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사업범위 : 아암공원(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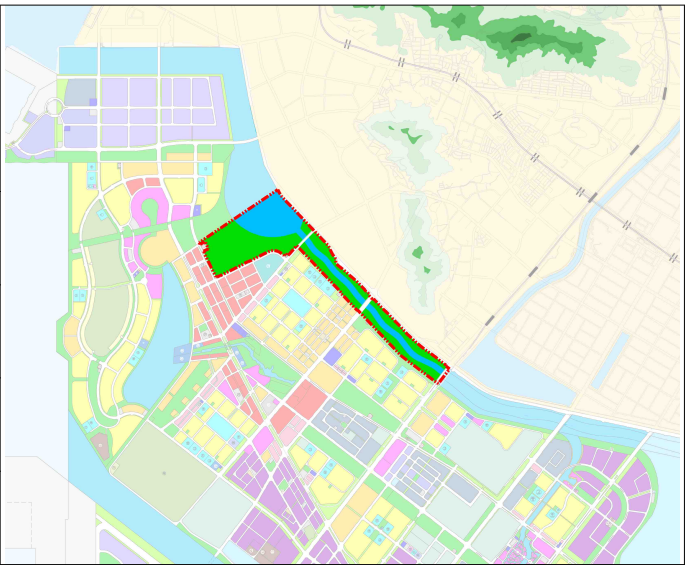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기협의 면적 아암공원(A)		금회 협의 대상 면적 (아암공원(B))		합 계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공원	1,456,312.0	97.5	2,221,623.3	97.0	3,677,935.3	97.2	
육지부	447,787.7	30.0	—	—	447,787.7	11.8	
수로부	1,008,524.3	67.5	2,221,623.3	97.0	3,230,147.6	85.4	
도로	37,621.0	2.5	68,619.5	3.0	106,240.5	2.8	
합계	1,493,933.0	100.0	2,290,242.8	100.0	3,784,17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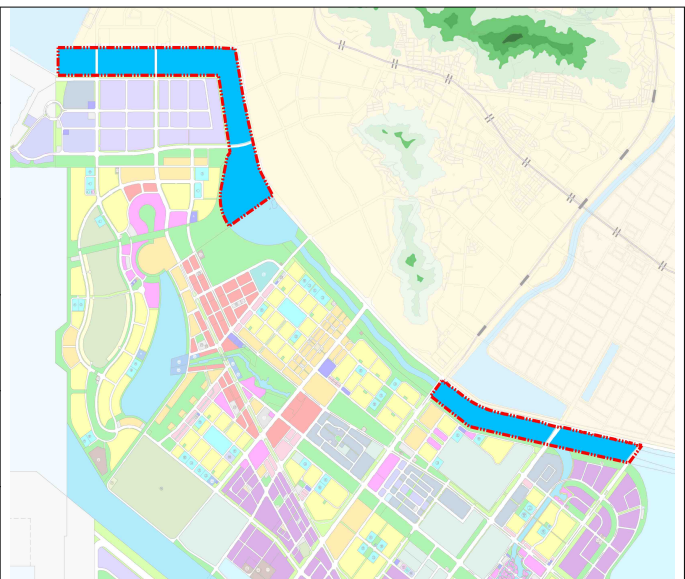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



○ 기협의 범위 : 아암공원(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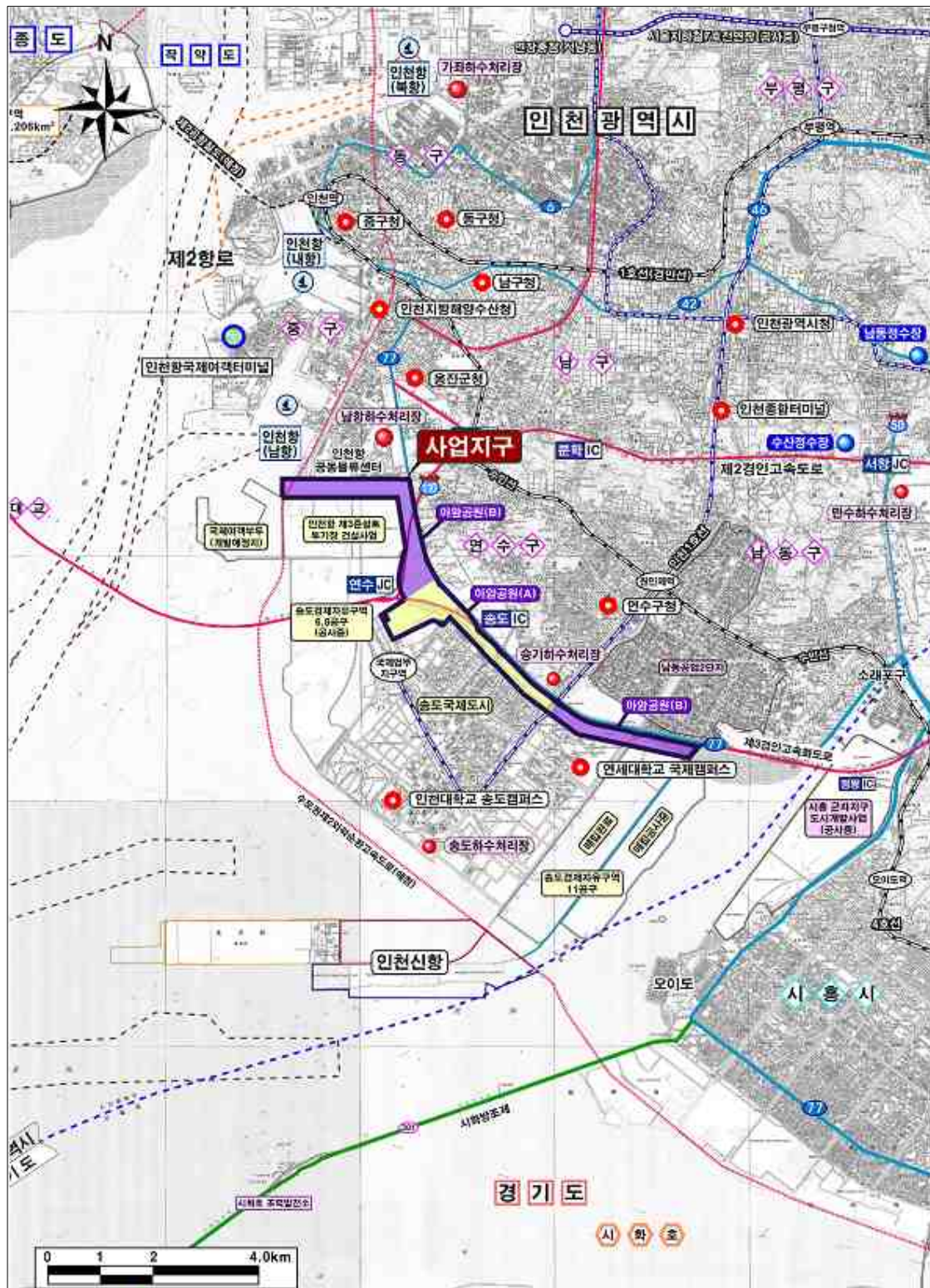
구 분	면적(㎡)	구성비	
공 원	1,456,312.0	97.5	
육 지 부	447,787.7	30.0	
수 로 부	1,008,524.3	67.5	
도 로	37,621.0	2.5	
합 계	1,493,933.0	100.0	

○ 금회 협의 대상 범위 : 아암공원(B)

구 분	면적(㎡)	구성비	
공 원	2,221,623.3	97.0	
육 지 부	—	—	
수 로 부	2,221,623.3	97.0	
도 로	68,619.5	3.0	
합 계	2,290,242.8	100.0	

1.4 사업의 기대효과

- ☐ 송도국제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간조성
- ☐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및 교육 현장 제공
- ☐ 휴게, 여가 공간 확충으로 주민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제2장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2.1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선정

가. 평가대상항목 설정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은 환경영향요소와 연계하여 설정하였으며, 사업의 특성,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점평가항목 3개, 일반항목 11개, 제외항목 7개로 설정함.

<표 2.1-1> 평가항목의 선정

구 분	중점평가항목	일반평가항목	평가제외항목
대기환경	—	대기질, 기상, 악취, 온실가스	—
수환경	해양환경	수질, 수리·수문	—
토지환경	토지이용	지형·지질	토양
자연생태환경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	—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 경관	전파장해, 위생·공중보건, 일조장해
사회경제환경	—	—	인구, 주거, 산업

<표 2.1-2> 평가항목의 선정 사유

구 분	평가항목	평가항목 선정 사유	검토사항
중점 평가 항목 (3개)	동식물상	•공사시 및 운영시 육상 동·식물상 및 해양 동·식물상의 변화 예상	•공사시 및 운영시 육상 동·식물상 및 해양 동·식물상의 변화 예상
	해양환경	•공사시 및 운영시 해양수·저질 변화 예상	•공사시 및 운영시 해양수·저질 변화 예측, 저감대책 수립
	토지이용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환경변화 예상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환경변화 예상
일반 평가 항목 (12개)	자연환경자산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 자연환경 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상	•사업시행으로 사업지구 및 주변 자연 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 감방안 수립
	기 상	•사업지역 주변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기상현황 조사
	대기질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	•공사시 및 운영시 오염물질 발생 검토와 예측, 저감대책 수립
	악 취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악취영향 예측
	온실가스	•공사중 공사장비 온실가스 발생 예상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검토와 저감대책 수립

<표 2.1-2> 평가항목의 선정 사유(계속)

구 분	평가항목	평가항목 선정 사유	검토사항
일반 평가 항목 (12개)	수 질	•공사시 토사유출 영향 예상	○토사유출 및 오수발생량 예측, 저감 대책 수립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
	수리·수문	•운영시 홍수위 변화 예상	○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 수립
	지형·지질	•사업으로 인한 사면 및 토량 발생	○지형·지질의 특성파악 및 지형변화 예측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 수립
	소음·진동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상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영향 검토 및 저감대책 수립
	위 락	•실시계획 수립으로 인한 의한 위락 시설의 증감 발생	○사업지구 위락 영향 검토
	경관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경관변화 예상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변화 검토

<표 2.1-3> 평가 제외항목의 선정사유

구 분	평가항목	평가항목 제외 사유	비고
제외항목 (7개)	토 양	•실시계획 수립으로 토양과 관계없음	
	산 업	•실시계획 수립으로 산업과 관계없음	
	위생·공중보건	•실시계획 수립으로 위생·공중보건과 관계없음	
	전파장해	•실시계획 수립으로 전파장해와 관계없음	
	일조장해	•실시계획 수립으로 일조장해와 관계없음	
	인 구	•실시계획 수립으로 인구와 관계없음	
	주 거	•실시계획 수립으로 주거와 관계없음	

나. 평가항목별 평가범위의 설정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설정 사유

☐ 평가항목별로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설정사유를 <표 2.1-3>에 제시하였음.

<표 2.1-4> 평가항목별 평가범위의 설정 및 평가방법, 평가범위 설정 사유

구분	항 목	평가범위	평가방법	평가범위 설정 사유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보전하여야 할 육상 동·식물상 및 그 서식 환경을 파악하여 이들 보호 대상이 사업시행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사업시행에 따른 해양 동·식물플랑크톤 및 조간대 생물, 해양식물 및 난자치어의 영향요인 파악	•사업시행으로 인해 육상 및 해양 동·식물상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 지구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 자산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보호지역 분포시 영향 및 대책수립 •법적보호종 분포시 영향 및 대책 수립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 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대기 환경	기상	•인천자동기상 관측소	•기상통계분석 (기온, 습도, 바람, 현상일수 등) •대기질 영향예측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사업지역 및 인근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타 항목의 평가자료로 이용
	대기질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반경 500m)	•공사시 장비운영에 따른 PM-10, NO2 항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공사장비 가동시 연료사용 등에 따른 PM-10, NO2 영향이 예상 되는 지역
	악 취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운영시 악취발생 여부	•운영시 수로부 정체가능성에 의한 악취 영향 여부
	온실가스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사업의 계획내용,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영향 예측 •관계법령 및 계획에 따른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	•공사시 장비 가동으로 인한 온실 가스 영향 예상지역
수환경	수질	•사업지역 및 주변수계	•우수 및 오수처리계획, 비점오염 물질 처리계획	•공사시 및 운영시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수리·수문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수로부 구성에 따른 주변지역 침수영향	•사업지역 주변지역 우수유출 처리 대책수립 필요
	해양환경	•사업지역	•공사시 및 운영시 해양수질 영향 요인 파악	•공사시 및 운영시 수로부 해양 수질 영향 예상
토지 환경	토지이용	•사업지역	•운영시 토지이용계획	•운영시 토지이용변화 예상
	지형·지질	•사업지역	•사업지역 지형변화, 토공량, 비탈면 등 영향 분석	•토공사 및 비탈면 발생 예상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사업지역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방안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소음·진동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반경 500m)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예측	•공사시 소음 및 진동의 영향 이 예상되는 지역
	위락	•사업지역	•사업지역 주변 위락시설 현황 파악	•사업으로 인한 위락시설 변화
	경관	•사업지역	•사업지역 주변 조망점 선정	•사업으로 인한 경관 변화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환경상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으며, <표 2.2-1>에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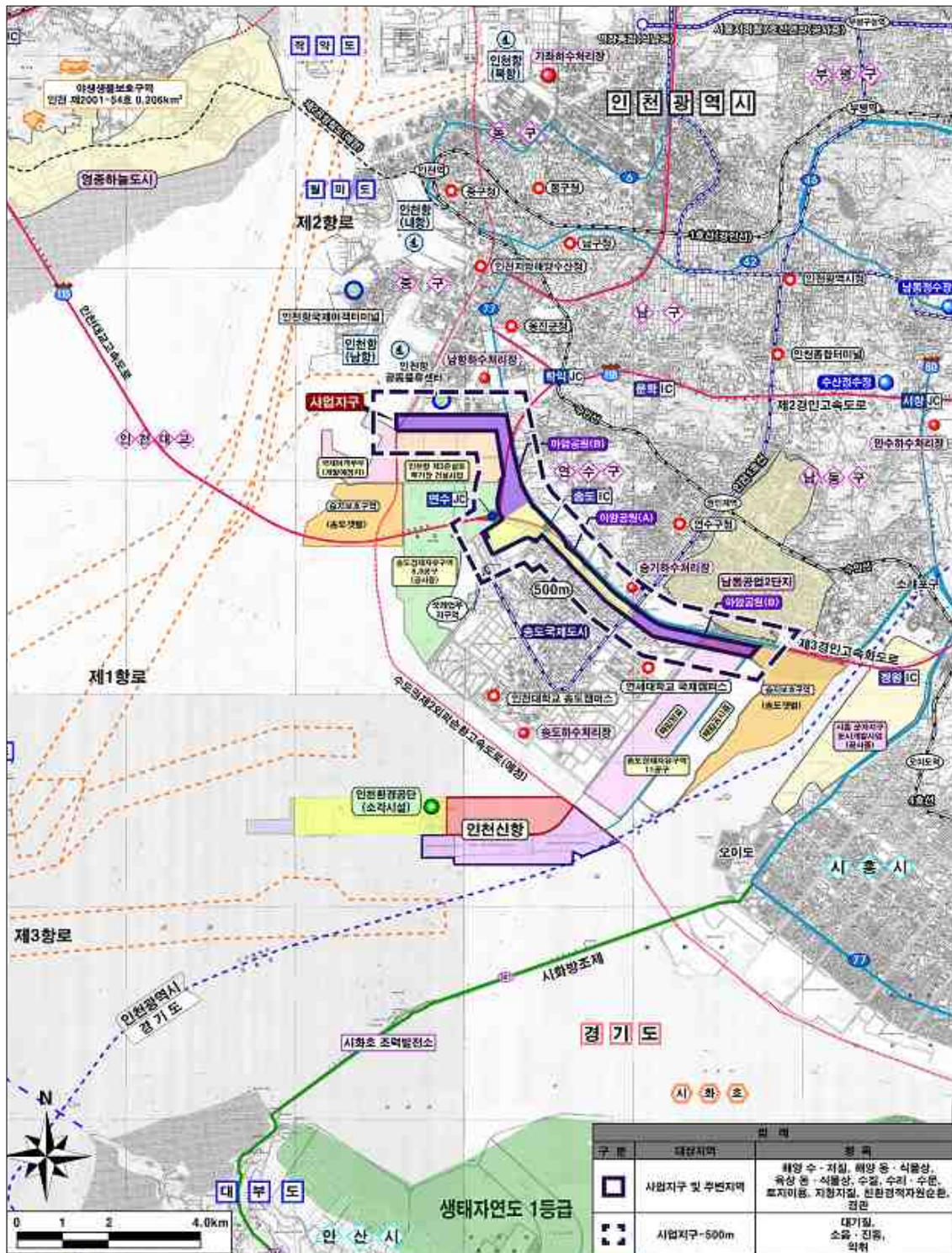
< 표 2.2-1 > 평가항목별 대상지역 설정

구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평가대상지역	비 고
대기 환경	기상	•사업지역 및 인근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인천자동기상관측소	•공사시
	대기질	•공사시 비산먼지 및 NO ₂ 등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약 500m 이내	•공사시
	온실가스	•공사시 장비 가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공사시
	악취	•운영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운영시
수환경	수질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역 및 주변 수계	•공사시 •운영시
	수리·수문	•운영시 주변지역 침수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운영시
	해양환경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역	•공사시 •운영시
토지 환경	토지이용	•운영시 토지이용변화가 예상되는 사업 구간내	•사업지역	•운영시
	토양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지형·지질	•공사시 및 운영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역	•공사시

<표 2.2-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계속)

구분	항 목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평가대상지역	비 고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해 육상생태계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생태계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공사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조류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및 갯벌 일대)	•공사시 •운영시
	자연환경자산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역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공사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역 경계로부터 약 500m 이내	•공사시
	경관	•운영시 경관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역	•운영시
	위락	•운영시 위락현황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	•운영시
	위생·공중보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전파장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일조장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사회 경제 환경	인구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산업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주) 1. 500m이상 이격된 지역의 경우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보다는 기존 도로 및 공장등의 배경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임



< 그림 2.2-1 >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제3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협의회 개최

○ 심의의원 : 위원장 포함 총10명

- 공무원 5명, 관계전문가 3명, 환경단체 1명, 지역주민 1명

연번	구분	성명	직위	소속	비고
1	위원장	오 오 오	과장	인천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2	위원	오 오 오	송도계획팀장	인천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승인기관장 지명 소속공무원
3	위원	오 오 오	팀장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협의기관장 지명 소속공무원
4	위원	오 오 오	자연환경팀장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관할자치단체장 추천 소속공무원
5	위원	오 오 오	주무관	인천경제청 환경녹지과	관할자치단체장 추천 소속공무원
6	위원	오 오 오	선임연구위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7	위원	오 오 오	명예교수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협의기관장 추천 민간전문가
8	위원	오 오 오	책임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장관 추천 전문가
9	위원	오 오 오	공동대표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10	위원	오 오 오	회장	연수구 송도3동 통장자유회	지역 거주 주민대표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17. 04. 28 ~'17. 05. 17

□ 심의내용

○ 송도국제도시 아암공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심의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구 분	심 의 의 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 총괄의견 ○ 동 사업계획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2·7·8·9·11공구 일원에 아암공원(B)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아암공원(A,B) 전체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 현재의 토지이용현황, 기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아암공원(A)와의 일관성 및 연계성, 향후 개발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원 실시계획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의 설정은 주변 지역과의 조화 및 경관 훼손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동 사업구역의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그 범위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별도의견 없음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동·식물조사는 계절특성을 반영하여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시기, 조사 횟수, 범위 등을 선정하여야 함.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요 조류에 대한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분석·제시 ○ 대기질 및 소음·진동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환경부, 2013)」 및 주변 정온시설, 개발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외(송도지구 개발사업, 아암공원 조성사업) 수계 현황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고, 향후 워터프론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하류 수계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주변지역 주요 조망점(도로 등)에서의 경관영향분석(경관시뮬레이션 등)을 제시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에 따른 약식절차 대상사업 해당사항 없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동 심의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 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계획 추진의 목적, 배경, 추진경위,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구 분	심 의 의 건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	□ 총괄의견 ○ 본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아암공원(B)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아암공원(A,B) 전체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상위계획(2025년 인천광역시기본계획,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워터프론트 기본계획 등), 기본방향 및 관련계획의 부합성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제시하여야 하고 ○ 대상지역 주변 습지보호구역, 법정보호종(저어새,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갈매기 등) 이 서식하고 있는 등 공사시·운영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시 환경영향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확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계획상 해양환경 평가대상지를 사업지역으로만 정하였으나 공사시 습지보호구역 등 주변 해역에 영향이 예상되므로 주변지역까지 범위 확대 필요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현재 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해결책으로 2개 이상의 대안(No Action 포함)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공사시·운영시 수로내의 수질변화, 해수교환율변화, 침·퇴적변화, 조위변화 등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 또한 주변지역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시·운영시 환경영향을 예측하고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대상지역 인근 동·식물의 분포와 서식·생육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충분한 조사시기, 조사지점 및 횟수를 선정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 수렴 공고·공람 및 설명회시 동 사업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과 공청회 개최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사업규모가 약식평가 대상여부 검토기준 이상이므로 약식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6. 기타(평가준비서 작성내용 및 평가항목 결정시 고려사항 등을 참고) ○ 평가서 초안요약서와 본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황도면, 그림, 사진 등을 활용하고 가급적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함

구 분	심 의 의 건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 ○○○	□ 총괄의견 ○ 아암공원 실시계획이 송도 습지보호지역 일부를 포함하고 습지보호지역은 조류들의 취식지로 이용되어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동아시아 철새들이 북반구 시베리아 툰드라에서 남반구 호주까지 이동 중 먹이를 먹고 잠시 쉬었다 출발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 이러한 이유로 송도 신도시는 2·4공구 매립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11공구까지 매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에 매립으로 인한 조류서식지 파괴를 대체서식지 조성을 제시하여 매립을 진행하고 있다. ○ 현시점에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조류대체서식지 부분을 정리 본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하고 아암공원(B) 내 조류관련계획이나 대책은 상세하게 제시 바랍니다.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동식물상 평가대상지역 조류의 경우 현재 아암공원(B) 내 습지보호지역에서 알락꼬리 마도요, 제갈매기, 갯가리새, 검은머리 물떼새 등 많은 조류가 취식 및 휴식을 하는 공간으로 공사 시 조류에 대한 피해 영향이 매우 크며 조류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으므로 조류의 이동(시흥 갯벌 등) 선을 파악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게 조치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11공구에 접하고 있는 아암공원(B)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조류의 취식활동 및 향후, 저어새 등의 취식지 조성(인천 송도습지 조성사업 기본계획보고서 2012.12 경제자유구역청, 송도 11공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통합 본 2009.12 경제자유구역청)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작성 필요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본 준비서 p63 해양 수질 및 저질 조사계획과 p65<그림 4.2-3> 위치도의 지점 수가 상이 함 수정 요 ○ 악취평가 조사지점 추가 : 승기하수처리장 방류수의 해양방류지점의 악취 ○ p65<그림 4.2-3> 위치도 환경영향평가 ③~⑤사이의 물은 우수로 염분농도가 8~9(psu)로 민물이나 외 지역은 염분농도가 28~32(pus)로 바닷물로 통수 될 경우 ③~⑤의 민물 고기가 폐사 할 수도 있음을 고려 예측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별도 의견없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별도 의견없음 6. 기타 ○ 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일부는 공원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기반시설(방재시설 유수지)로 비가 올 경우 빗물의 수량을 조절하는 기능에 부가하여 공원, 습지보호지역 등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다. ○ 따라서, 이를 감안한 실시계획이 필요하며 공원 내로 우수가 유입되는 양과 수질오염 물질의 유입량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할 것 ○ 또한 송도에 건축된 건물 중에 지하수의 부력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를 우수관로로 상당량을 배출하여 아암공원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영향조사 필요 ○ 공원 내 수량은 우수에 의존하여 수량이 적고 정체되어 여름철에는 녹조가 상시 발생 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 아암공원 수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송도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재처리한 재이용수가 아암공원에 유입되고 있으니 유입수 수질과 영향도 함께 검토 제시

구 분	심 의 의 건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 총괄의견 ○ 사업지구 동측으로 습지보호지역이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암공원 수로의 물이 방류될 시에 습지보호지역에 직접적인 영향, 즉, 습지보호지역 갯벌의 펄이 물 방류와 함께 쓸려나가면서 소실되고, 그 결과 습지보호지역이 훼손될 수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으로 도래하는 다양한 철새들에게는 취식처가 사라지는 등의 막대한 생태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또한 아암공원 수로물의 수질이 나쁠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악취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동시에 습지보호지역 갯벌에서 서식하던 해양동물의 서식환경악화로 인하여 죽은 갯벌로 변모하고 더 이상 습지보호지역이라 할 수 없는 상태의 갯벌로 변할 수 있음 ○ 더불어 송도 주변 해역으로는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바, 이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아암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 시 및 운영 시의 영향 예측을 인근의 습지보호지역과 조류의 중요 서식처(예, 남동공단 유수지의 저어새 등)범위까지 포함하여 면밀하게 예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동 사업의 환경적 중대성과 습지보호지역 및 법정보호조류 등의 철새 및 해양동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에, 금회 준비서에 기술된 현지조사 범위, 지점, 방법 및 횟수(기간) 등으로는 현재의 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송도국제도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다 대폭 강화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문헌조사의 경우에도 기존 송도 국제도시 개발사업의 사후환경영향평가 통보서 자료를 인용함과 동시에 공공기관(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수산물과학원, EIAFF 등)과 인천지역 민간단체(저어새단체, 철새네트워크 등)의 자료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의 수립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습지보호지역, 남동공단 유수지, 특별관리지역까지 관련 항목별로 확대 설정이 필요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습지보호지역, 특별관리해역과 법정보호조류, 해양생물 등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과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을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조사·분석·평가하고, 필요시 금회 계획의 대표적인 조정·변경 또는 계획 내용의 삭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더불어 아암공원 수로의 물 공급과 배수 관련 수리학적/수환경적 메카니즘을 명료하게 조사·분석·평가하고, 수로 및 수로 물에 대한 운영 시의 유지·관리 계획 및 환경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일부 항목에 있어서 현지조사 지점이 1개에 지나지 않거나 아예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며, 현지조사 지점이 수개에 이르는 항목의 경우에도 동 사업의 특성과 환경적 영향 수준을 예측할 때에 충분한 지점을 대상으로 계획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현지조사와 문헌조사를 보다 대폭 강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구 분	심 의 의 건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계속) ○ 특히, 습지보호지역과 갯벌, 주변 특별관리해역, 해양동물 및 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면밀하게 실시 ○ 소음·진동항목의 경우에는 인간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도 습지보호지역과 남동공단 유수지의 조류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여 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적정함. 추가적으로 인천지역 민간단체(저어새단체, 철새네트워크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별도 의견없음 6. 기타 ○ 참고사항으로, 습지보전법 제13조(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제8조1항에 따른 습지보호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토지의 형질 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3)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4)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5)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 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습지보호지역, 특별관리해역과 법정보호조류 등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과 실효성 있는 저감방안을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조사·분석·평가하고, 필요시에는 계획의 대폭적인 조정·변경 또는 계획 내용의 삭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천대학교 ○○○	□ 심의의견 ○ 지구단위구역경계의 확대와 토지이용의 고밀화(상업, 주거, 준주거 지역 면적 확대)는 토지이용 수요를 정밀 검토 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 토지이용의 상향조정으로 건축물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경관저하 지속가능성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도시환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일부 합필개발의 폐지는 개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계획으로 판단됨. ○ 일부도로의 축소 조정(8미터-6미터)는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순리적인 계획으로 판단됨.

구 분	심 의 의 건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	□ 총괄의견 ○ 본 사업은 송도국제도시에 조성계획인 아암공원(B)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아암공원(A,B) 전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임. ○ 실시계획은 수로의 환경을 목적에 맞게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 현황 조사하고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마련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따라서 이에 적합한 조사 범위, 항목, 조사 정점 및 빈도를 설정하여 시행되어야 함.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공원으로 조성 면적의 대부분은 수로로 환경 및 경관을 쾌적하게 유지하여 친수공간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 따라서 수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 구역(송도신도시 및 구 도시, 산업단지 구역의 점, 비점오염물질 부하 발생 지역)과 수로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로 외곽 해역(습지보호구역 등 포함)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 시행시 수로의 공사 및 운영시 수질은 구역의 오염물질과 수로의 수리·수문 인자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고려한 환경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제시. 3.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져야 할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 ○ 해양동·식물상은 환경 현황 파악 및 생태적 오염도를 평가에 중요한 항목으로 판단됨. 따라서 현황조사계획에 수로 및 인접 해역의 조하대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을 포함하여함. ○ 환경현황조사 계획에는 환경영향평가 조사횟수 및 시기를 제시하여야 하며, 수질 악화가 예상되는 하계 조사를 필히 포함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토사, 유기물, 영양염류 등의 오염물질이 수로내 및 외측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지속적인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사 빈도(조석상황별 조사 고려), 조사 범위, 정점수를 확대한 조사계획 제시. ○ 수로의 퇴적물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환경 예측 및 평가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로 내·외측에서의 용출량 조사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해양수질·퇴적물과 해양생물상 조사는 환경 변화 및 영향 인자 분석을 위하여 조사 정점과 조사 일자를 일치하여 수행하도록 계획 수립 시행하여야 함.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별도 의견없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별도 의견없음 6. 기타 ○ 별도 의견없음

구 분	심 의 의 건
인천환경 운동연합 ○○○	□ 심의의견 ○ 기존의 송도 아암공원(A)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현재 아암공원(A)의 대기, 해양수질 등 각 분야별 환경상태에 대한 확대조사가 필요함 ○ 본 아암공원의 경우 주변 지역이 송도습지보호구역과 국제적인 습지협약인 람사르 사이트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변 해안에 서식하는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이동여부 및 서식여부에 대한 조사하여 향후 공원의 컨셉에 고려해야 할 것임 ○ 나아가 이 공원이 향후 송도 습지보호지역으로 편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습지보호지역 지정수준의 각 환경분야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기 바람 ○ 공원지정 후 주민 및 관광객등 방문에 따른 영향을 판단하여 차량의 급증, 대기, 소음, 오페수 배출량등의 환경오염 가중도를 수치로 제시하고,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대안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이 지역에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이 현재 계획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특히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의 중심지역임을 고려할 때 공원내 수로의 안정적 수질 유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바람 ○ 향후 송도해안 철책선이 철거될 것을 고려하여 공원내외의 갯벌의 상태조사 및 오염원의 위협요인과 차단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 연수구 및 송도주민과 설명회를 갖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기 바람
지역주민 ○○○	□ 총괄의견 ○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폐기물의 처리대책은 꼭 챙겨서 차후에 어떠한 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의의견 1.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환경보전방안 등의 최적대안은 따로 기술을 하지 않겠습니다. 3. 평가항목 및 범위 .방법 등 ○ 평가항목 중 폐기물 발생량 등의 처리 및 대책은 면밀히 하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없음 5.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없음 6 . 기타 ○ 없음